

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2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담당관 김영고)

가 제안이유

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수정(안 제4조, 제5조)

다 관계법령

- 「학교급식법」
-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
-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근호)

-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
-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 중 “불필요하게 규정한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” 등을 “지원체계”로 변경하고, 동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 중 “지원신청시기, 절차, 서식, 신청공고”의 규정을 “지원신청시기, 절차, 서식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성장기

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